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5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5248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5

가. 원고는 [redacted]구 B 종교용지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C성당'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1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기존 성당을 철거하고 2019. 7. 26. 착공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201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성당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이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7,485,632원, 재산세(도시지역분) 5,239,942원, 지방교육세 1,497,126원 등 합계 14,222,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9. 12. 6.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C성당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담당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절차가 지연되어 2019. 4. 19.에야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기존 성당을 철거하고, 성당 신축을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5

차를 성실하게 밟아 2019. 7. 26. 착공신고를 마쳤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전후로 기존 성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C성당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물리적으로 건축허가일인 2019. 4. 19.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 51일 이내에 신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착공신고를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 됨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9. 2. 22. 이 사건 토지에 C성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4. 19.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기존 성당을 철거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5

2019. 7. 26. 착공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성당이 철거된 이후 나대지 상태였던 사실, ② 당시 이 사건 토지에 C성당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머무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시공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마치고 신축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일 뿐 공사에 착수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재산세는 부동산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 문언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는지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해당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직접 사용될 건축물이 건축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적용을 부인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5

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5

■ 구 지방세법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끝.